

# <IC 카드 대응 대여 물품보관함 사용 약관>

## 제 1 조 (IC 카드 대응 대여 물품보관함 사용 방법과 사용자 책임)

본 물품보관함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대여 보관함입니다. 사용하실 때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.

IC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합니다.

IC 카드가 잠금 해제 시 열쇠가 됩니다.

잠금부터 잠금 해제까지 사용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.

## 제 2 조 (물품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)

보관함에는 다음 물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.

(1) 휘발성 또는 폭발물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물. (2)사체. (3) 총포, 도검류 및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. (4)보관함 또는 주변 시설 등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. (5)불결한 물품, 악취가 나는 물품 및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. (6)동물. (7)현금, 유가증권, 보석, 귀금속, 서화, 골동품 등 고가품 및 중요 서류. (8) 기타 보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물품.

## 제 3 조 (제 2 조 위반 시의 조치)

사용 기간 중 해당 물품(이하 ‘물품’이라 한다)이 제 2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당사가 잠금을 해제하여 당사 소정의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(보관 기간 중에도 동일). 단,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보관함 내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포함하여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4 조 (사법 당국에 대한 협조)

경찰 등 사법 당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, 요청한 당국자 입회 아래 당사가 잠금을 해제하여 물품 검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5 조 (사용 기간)

1. 사용 개시일을 포함하여 3 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사용 1 일은 사용 개시 시간부터 가장 가까운 오전 1 시까지로 합니다.

## 제 6 조 (사용기간 초과 후의 조치)

사용 기간이 초과되면 당사에서 잠금을 해제하고 물품을 당사 소정의 보관 장소로 옮겨 그날부터 30 일간 보관합니다.

## 제 7 조 (사용 요금)

사용 요금, 초과 요금 및 보관 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1) 사용 요금의 1 일은 사용 시작부터 다음 날 오전 1 시까지로 합니다.
- (2) 초과 요금은 조작 화면에 표시된 요금입니다.

(3) 보관 요금은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보관일 1 일당 사용 요금을 곱한 금액입니다.

## 제 8 조 (보관 기간 중 물품 수령)

1.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령할 때, 사용자는 사용한 보관함의 설치 장소, 이용증명서에 기재된 보관함 문 번호, 사용 월일 및 물품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이 경우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물품의 내용이 일치하면 사용자는 주소, 성명을 기재하고 수령인을 날인한 후, 초과 요금 및 수령일까지의 보관 요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.

2. 물품 수령 시 사용했던 이용증명서는 반납해야 하며, IC 카드 및 이용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.

## 제 9 조 (보관 기간 경과 후 물품의 처분)

30 일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사용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에서 처분하며, 그 대금은 보관료 및 기타 비용에 충당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# 제 10 조 (배상 책임)

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당사는 물품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- (1) 제 2 조에 명시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.
- (2) IC 카드 또는 이용증명서 분실, 도용 및 사용자가 완전히 잠그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.
- (3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물품이 멸실, 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.

(4) 경찰 등 사법 당국으로부터 물품의 임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압류된 경우.

(5) 기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.

2. 보관함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물품 반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,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3. 보관 중인 물품에도 본 조의 (1), (3), (4), (5)항을 적용합니다.

## 제 11 조 (사용자의 배상 책임)

보관함의 사용 또는 무단 사용으로 인해 당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,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.

주식회사 나고야 교통 개발 기구